

# 海上保險約款上 戰爭危險에 관한 研究

정 영 석\* · 김 광 애\*\*

## The Study on the War Risk in the Marine Insurance Clauses

Yeong-Seok, Cheong · Kwang-Ae, Kim

### 〈목 차〉

Abstract	IV. 協會戰爭危險 擔保約款
I. 머리말	V. 맷음말
II. 戰爭危險의 範圍	參考文獻
III. 戰爭危險 免責約款	

### Abstract

The War Risks excluded by the F.C. & S. Clause, if this is all that is undertaken by the war risks policy, merely reverts to the cover granted by Lloyd's S.G. form. It does not enlarge the risks in any way.

In 1982, when the ICC were revised, and the present marine policy from was introduced, the F.C & S Clause was replaced by completely new Clause to exclude reads as follows ;

- 6 In no case shall this insurance cover loss damage or expense caused by
  - 6.1 war civil war revolution cover loss damage or expense caused by therefrom, or any hostile act by or against a belligerent power
  - 6.2 capture seizure arrest restraint or detainment(piracy excepted), and the consequences thereof or any attempt thereat
  - 6.3 derelict mines torpedoes bombs or other derelict weapons of war.

This War Exclusion Clause replaces the of F.C. & S. Clause and now appears in all the standard clauses. The wording is similar to the War Exclusion Clause in the (A) Clauses with one important exception.

This is that, whereas in the (A) Clauses the risk of piracy is excepted from the list of war perils - "capture, seizure, arrest, restraint or detainment" - listed in Clause 6.2, piracy is not so excepted under the (B) and (C) Clauses. The effect is that the merchant is protected against a loss by piracy if insured with the (A) Clauses. Moreover, since piracy is not included as one of the perils covered by the (B) or (C) Clauses for marine perils plus the standard Clauses for War Risks will,

\*한국해양대학교 국제대학 법학부 교수,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perhaps to his astonishment, find himself unprotected against the risk of piracy.

In ITC-Hull, 1983, these War Exclusion Clause were numbered 23. The wording is similar to the War Exclusion Clause in the ICC(A) Clauses.

The perils covered by Clauses 1 and 2 of the Institute War Clauses(Cargo)- IWC dated 1.1.1982. and Institute War and Strikes Clause(Hull-Time, 1983). In ITC-Hull , This form combined war risks and strikes risks in one document. In common with all Hull forms, the following words appear in the heading: "This insurance is subject to English law and practice". This risks covered by this form are set out in Clause 1.

## I. 머리말

海上保險이 생성된 이래 戰爭危險은 海賊危險과 함께 가장 중요한 海上危險의 하나였으며, 海上保險은 이들 危險이 있었기 때문에 발전해온 것이다. 당시 전쟁은 해적과 마찬가지로 일상사였으며, 오늘날과 달리 무기가 발전하지 않았고, 더욱이 전쟁의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보험요율의 산출이 어렵지 않았다.<sup>1)</sup>

근대로 들어서면서 전쟁의 발생은 희소하게 되었지만, 신무기와 전쟁의 규모가 커지면서 과거와 같이 戰爭危險이 미치는 범위를 용이하게 예측할 수 없게 되었고, 이는 위험을의 측정에 있어서도 과거의 경험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게 되었음을 뜻한다. 따라서 일상적으로 발생되는 海上危險의 개념에서 점차 戰爭危險을 제외하게 되었다.<sup>2)</sup>

그러나 실제로 전쟁 중인 지역이나 전쟁이 도발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航行하는 경우에는 戰爭危險擔保가 必要不可缺하다. 이에 戰爭危險을 담보하는 特約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이 戰爭危險을 담보하는 特約은 捕獲·拿捕 不擔保約款의 발전에 따라 계속 수정·보완되어 왔다.

海上保險에서 말하는 戰爭은 國際法上의 概念보다도 넓은 의미로서 상거래에서 전쟁이라고 인정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概念이다. 더욱이, 戰爭危險 不擔保約款에서 免責되거나 또는 戰爭危險 擔保約款에서 擔保되는 戰爭危險은 거래통념상의 戰爭危險 이상에 미치고 있다.<sup>3)</sup>

이처럼 해상보험관계의 法律이나 約款에서는 戰爭危險의 정의를 명확히 하지 않고, 보험자가 免責 또는 擔保하는 전쟁위험의 범위와 내용은 협회보험약관상 전쟁위험 면책약관이나 협회전쟁보험약관(Institute War Clauses; 이하 IWC라 한다) 또는 협회전쟁스트라이크약관(Institute War and Strike Clauses; 이하 IWSC라 한다)에 의하고 있다. 戰爭危險을 담보하는 特約인 IWC와 IWSC는 戰爭危險과 海上危險을 구분하는 실제적인 기준이 되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전쟁위험의 범위 및 내용은 그때마다 적용되고 있

1) 加藤由作, ロイド保険證券の生成, 春秋社, 1953, 129쪽.

2) 龜井利明, 海上保險證券免責條項論, 保險研究所, 1961, 293~294쪽.

3) 이시환, “海上保險에 있어서의 戰爭危險에 관한 一考察”, 保險學會誌, 한국보험학회, 1986. 10, 128쪽.

는 전쟁위험 담보약관과 그에 관련된 각종 判例를 검토하여 판단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협회보험약관을 중심으로 전쟁위험 면책약관 및 담보약관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그 내용을 해석 · 고찰하고자 한다.

## II. 戰爭危險의 範圍

### 1. 戰爭危險의 意義

일반적으로 戰爭危險이란 戰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의 海上危險을 말하는데 이것 은 평화적 또는 보통의 해상위험과 대응되는 것으로 포괄적인 개념이다.<sup>4)</sup> 위에서 언급했듯 海上保險에서 말하는 戰爭은 國際法上의 概念보다도 넓은 의미로 사용되며 거래통념상 전쟁으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따라서 戰爭危險도 거래통념상의 戰爭狀態와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발생하는 각종의 危險을 가리킨다.

해상보험에서 戰爭의 概念을 일정한 규모나 조직, 이유와 방법을 가지고 단체간의 戰爭狀態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같은 조건을 구비한 투쟁은 戰爭으로 간주한다고 볼 수 있다. 免責約款에서는 경제적 이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同盟罷業이나 工場閉鎖등과 같은 戰爭狀態에는 그것이 비록 대규모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戰爭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경제적 戰爭狀態의 範圍를 넘어 무력에 의해 국가권력에 도전 또는 반항하게 될 때는 이것을 戰爭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2. 海上保險에서의 주요 戰爭危險

#### (1) 危險約款에서의 戰爭危險

S.G.海上保險證券上에 있는 危險約款에는 해상고유의 위험, 화재, 투하 등의 해상위험과 함께 전쟁과 관련된 위험으로는 軍艦, 外敵, 捕獲免許狀<sup>5)</sup>襲擊, 海上에서의 占有奪取, 國籍不明이나 상황 또는 성질이 어떻든 國王 · 君主 및 人民의 拘束, 抑止 및 抑留등의 危險을 열거하고 있다.

危險約款에서 열거된 이러한 용어는 모두 위험이 아니고 어떤 것은 위험의 原因力 또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도 있다. 예컨대 捕獲免許狀이나 軍艦은 위험 그 자체가 아니고 위험의

4) Robert H. Brown, Dictionary of Marine Insurance Terms, 3rd ed., London, Witherby & Co. Ltd., 1968, p. 98.

5) 海賊은 사리사욕을 위하여 다른 선박을 무차별 약탈하는 자를 말하는 반면, 포획면허장은 法的權限과 정치적 색채를 띠는 점이 서로 다른 점이다. 捕獲免許狀은 敵의 상선을 습격하고 포획할 권리로 개인에게 부여한 국가의 權利授與證書를 의미한다. 또한 報復捕獲免許狀은 敵國의 상선에 대한 보복적 포획의 권리를 국가가 명시한 증서이다. 이러한 증서를 소유하고 포획하는 행위를 하는 선박은 자국의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이기태, 海上保險, 法文社, 1986, 124쪽).

원인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危險約款에서는 위험의 원인을 만드는 軍艦이나 外敵 또는 捕獲免許狀, 報復捕獲免許狀을 가진 선박에 의해 襲擊, 拿捕, 捕獲, 擊沈, 捕擊, 防火등 이러한 加害行爲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것은 모두 戰爭危險이라 할 수 있다.

危險約款의 戰爭危險範圍를 알기 위해서는 F.C. & S Clause와 같이 살펴보아야 한다. F.C. & S Clause는 제1차 나폴레옹 전쟁 때 捕獲, 拿捕, 抑留 등의 위험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됨에 따라 보험자가 이러한 종류의 위험을 自衛를 위해 不擔保 特別約款으로 보험증권에 삽입함으로써 시작이 되었다.<sup>6)</sup> 만약 보험자가 이러한 위험을 담보하려 할 때는 보험증권상의 F.C. & S Clause를 삭제함으로써 위험을 담보하는 것이 하나의 慣行이 되었다.<sup>7)</sup>

F.C. & S Clause에서는 捕獲, 拿捕, 拘束, 抑止 또는 抑留 및 이상의 결과 또는 이상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결과를 담보하지 않는다.<sup>8)</sup> 여기에 추가하는 “宣戰布告의 有無는 不問하고(Whether there be a declaration of war)<sup>9)</sup> 적대행위 또는 군사적 행동의 결과와 내란, 혁명, 모반, 반란 또는 이것으로부터 발생한 國內鬭爭의 결과 또는 海賊行爲는 담보하지 않는다.”<sup>10)</sup> F.C. & S Clause에서의 戰爭危險은 捕獲, 拿捕 등 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인 騷擾(riot)의 危險 즉 內亂, 革命 등의 위험을 포함시켰고 海賊危險과 敵對行爲와 군사적 행동도 포함했다는 점이 특이하다.

危險約款上에 열거된 戰爭危險의 種類와 F.C. & S Clause상의 戰爭危險의 내용은 사실상 동일하다. 危險約款上 戰爭危險은 種類는 고어체로 표현하였는데 비해 F.C. & S Clause는 현대체로 표현하고 있다. 다만 革命 · 反亂 등의 위험이 國際法上 戰爭危險이 아님지만, 해상보험에서는 전쟁위험인 까닭에 이들 위험과 近因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험자가 담보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 (2) 新協會積荷保險約款과 協會船舶保險約款

新協會積荷保險約款(New Institute Cargo Clause, 1982 : 이하 新ICC라 함) 제6조 전쟁위험 면책약관에서 戰爭危險의範圍를 규정하고 있다. 즉 內亂, 革命, 謀叛, 反亂 또는 이로 인하여 생긴 國내투쟁 또는 交戰國에 의한 交戰國에 대해 행해진 敵對行爲와 捕獲, 拿捕, 拘束, 抑止 또는 抑留와 이러한 행위의 결과 또는 이러한 행위를 기도한 결과(海賊危險은 削除)와 遺棄된 機雷, 魚雷, 爆彈 기타 遺棄된 戰爭武器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6) Michael J., Mustill and J.C.B., Gilman, Arnould's Law of Marine Insurance and Average, Vol 2, 16th ed, London, Stevens & Sons, 1981, p. 20.

7) Ibid., p. 731.

8) 1883년에 Lloyd's 보험자 총회에서 처음으로 채택한 F.C. & S Clause의 내용이다. 이 約款에서 특이한 것은 新ICC나 ITC-Hull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해적위험을 제외한 점이다(이시환, 위의 논문, 130쪽).

9) 종래의 “Whether before or after declaration of war”(宣戰布告의 前後不問)를 “Whether there be a declaration of war”(宣戰布告의 有無不問)로 1937년 F.C. & S. Clause에서 개정하였다. 이것은 宣戰布告 없이도 戰爭이 일어나기 때문에 宣戰布告 없이 발생한 戰爭危險에 대하여 면책하기 위한 것이다(이시환, 위의 논문, 131쪽; R. J. Lambeth, Templeman on Marine Insurance, 5th ed, London, Macdonald & Evans Ltd., 1981, p. 168).

10) 종래의 F. C. & S Clause에서 이렇게 추가한 이유는 스페인內亂때 지중해 및 기타 해상에서 國籍不明의 잠수함 또는 항공기가 출몰하여 각국 선박에 加害行爲를 하였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위험을 해상위험으로 간주하면 F.C. & S Clause가 삽입되어 있어도 보험자는 보험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해적위험을 戰爭危險으로 취급하게 한 것이다(Ibid.).

協會船舶保險約款(Institute Time Clause-Hull, 1983 : 이하 ITC-Hull라 함)의 경우도 제23조에서 戰爭危險의 범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ITC-Hull상의 戰爭危險의範圍는 新ICC상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다만, 海賊危險을 ITC-Hull와 新ICC(A)약관에서는 戰爭危險의範圍에서 제외되었으나 新ICC(B) · (C)약관에서는 해적위험에 대해 명시하지 않아 중성위험으로 취급하고 있다.<sup>11)</sup>

新ICC, ITC-Hull상의 戰爭危險과 F.C. & S Clause상의 戰爭危險은 遺棄된 機雷, 魚雷, 爆彈 또는 遺棄된 기타 武器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대개 동일하다.

### III. 戰爭危險 免責約款

#### 1. 意義

戰爭危險은 19세기 말 이래 해상보험증권에서 免責으로 규정되어 왔다.

1779년 S.G. Form증권의 危險條項에서 負擔危險으로 열거되어 있었으나, 동 증권의 이탈릭 서체조항인 捕獲拿捕免責條項(F.C. & S Clause)에 의하여 그 免責의範圍를 적대행위에 의한 손해뿐만 아니라 海賊行爲에 의한 손해까지도 免責되는 것으로 추가하였다.<sup>12)</sup>

이에 대하여 新ICC(1982) 제6조와 ITC-Hull 제23조 戰爭免責條項(War Exclusion Clause)은 같은 취지에서 敵對行爲에 의한 손해를 면책으로 하고 있으나, 1963년 약관의 捕獲拿捕免責條項과 비교하여 매우 간결하게 표현함으로써 戰爭免責危險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피보험자가 戰爭危險을 담보받기 위해서는 協會保險約款과 함께 개정된 協會戰爭約款과 협회전쟁스트라이크약관을 새로운 해상보험증권양식에 첨부하여 사용할 수 있다.

#### 2. 戰爭危險 不擔保約款의 變化過程

##### (1) 1779년 Lloyd's S. G. Policy上의 捕獲 · 拿捕免責條項의 導入

1779년 Lloyd's S. G. Policy의 위험조항에 이르기까지 戰爭危險은 주요한 海上危險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 당시의 해상사업에 있어서 군함이나 外敵, 海賊, 拿捕 등의 危險은 신의 위험(불가항력)과 "바다의 위험(perils of the seas)"과 더불어 통상적인 해상 위험 이었다. 따라서 1779년 Lloyd's 보험증권의 위험조항에는 戰爭危險과 이와 유사한 위험(海賊行爲등)들이 다른 해상위험과 함께 피보험위험으로 열거되어 있다.<sup>13)</sup> 그러나 18

11) 조현정, 해상보험에서 전쟁위험의 개념해석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경영경제 제26집 2호 1993, 6., 140쪽.

12) 이재복, 槓荷保險約款論, 保險研修院, 1995, 314쪽.

13) R. J. Lambeth, op. cit., p. 169.

世紀에 들어와 보험자들은 이들 戰爭危險으로 인하여 많은 損失<sup>14)</sup>을 입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자 1883년 Lloyd's 보험자총회에서 捕獲拿捕免責條項(F.C. & S Clause)을 채용하기 합의하였다.<sup>15)</sup>

포획에 의한 손해가 감소하지 않게 되자 1898년 Lloyd's 보험자들은 捕獲拿捕免責條項을 Lloyd's 보험증권의 본문에 삽입하기로 결의하였으며, 다시 1899년에는 戰爭危險 이후 통상적인 해상보험증권에 의해 부담하여서는 않되고 모든 Lloyd's 보험증권에는 반대의 특별한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F.C & S Clause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결의하였다.<sup>16)</sup>

## (2) 捕獲 · 拿捕免責條項(F.C & S Clause)의 變化過程

1779년 Lloyd's S.G Policy form은 1899년 捕獲拿捕免責條項이 插入되기 전의 보험증권을 A Policy라고 부르면 戰爭免責條項이 포함된 B Policy가 1982년 MAR Form이 등장하기 전까지 사용되어 왔다.<sup>17)</sup> 최초의 1912년 협회적하약관(ICC(FPA))에서는 제1조에 다음과 같은 S.G. 보험증권상의 이 조항을 그대로 규정하였다.<sup>18)</sup>

1. warranted free of capture seizure and detention, and the consequences thereof or any attempt thereat, piracy excepted, and also from all consequences of hostilities or warlike operations, whether before or after declaration of war.

이 약관에서 특기할 사실은 新ICC 및 1983년 ITC-Hull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해적행위가 제외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전쟁위험은 면책하더라도,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담보해 오던 해적위험은 계속 담보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해적에 의한 포획, 나포는 보통의 해상위험으로 취급되어 보험자로부터 당연히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그후 1898년에는 앞으로 전쟁위험을 통상의 해상보험증권으로는 담보하지 않도록 하고, Loyd's 보험증권에는 계약당사자간에 반대의 합의가 없는 한 반드시 이 F. C. & S. Clause를 삽입하도록 결정하였다.<sup>19)</sup> 이어 1916년에 Sanday & Co. v. British & Foreign Marine Insurance Co., Ltd. 사건의 판결결과로 1916년 2월 8일자 면책조항을 개정하여

14) Lloyd's 통계에 의하면, 1776년부터 1783년까지 3,386隻의 선박이 敵(enemies)에 의해 捕獲되었으며, 그와 함께 495隻의 선박이 회수되었고 507隻의 선박은 배상금을 지급한 후 다시 찾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그 기간중에 무역에 종사한 선박의 약 8%에 해당되는 선박이 포획에 의한 손해를 입었다. R. H. Brown, Marine Insurance, Vol 1. Principles & Basic Practice, 5th ed., Witherby & Co. Ltd., 1986, p.171 : 이 통계는 선박이 파괴되거나 손상을 입은 손해와 이에 관련한 적하의 손해를 제외한 선박의 포획에 의한 손해 및 다시 회복한 통계만을 나타낸 것이다.

15) Michael J., Mustill and J. C. B. Gilman,, op. cit., p. 20.

16) Ibid., p. 731 : Lloyd's에서 채택된 이 관습은 그 후 대부분의 해상보험회사들에 의해서도 시행되었으나, 실제 戰爭危險의 면책은 2년 전인 1896년에 London Assurance Company에 의해 처음으로 제안되었다.

17) R. H. Brown, Ibid., p. 122 : 그러나 런던保險協會編, 英國海上保險約款의 變遷, 損害保險事業研究所, 1968, p.196에 의하면 Lloyd's 보험증권은 두 종류의 증권양식이 인쇄되었는데, 항해증단면책조항을 포함한 A form과 포획나포면책조항이 삽입된 B form으로 구분하고 있다.

18) 런던保險協會編, 英國海上保險約款의 變遷, 損害保險事業研究所, 1968, 189쪽.

19) Michael J., Mustill and J.C.B., Gilman, op. cit., p. 731.

"capture, seizure" 다음의 "抑留(detention)를 삭제하고 그 대신 S.G. 보험증권에 규정하고 있는 "抑止(arrests)와 抑留(restraints or detainment)"를 삽입하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이 사건의 판결 결과로서 航海中斷免責條項(Frustration Exclusion Clause)이 협회적하약관에 삽입되는 계기가 되었다.<sup>20)</sup>

#### 가. 1936년 Spain內亂과 1937년 捕獲拿捕免責條項의 改正

1936년 7월 스페인內亂의勃發로 인하여 지중해 등에서 국적불명의怪潛水艦이 출몰하여 Spain에서의 전투와 전혀 관계없는 상선을 공격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를戰爭行爲가 아닌 海賊行爲로 간주하면 捕獲拿捕免責條項이 포함되어 있는 해상보험증권에 의해서도 보험자는 그러한 행위의 결과로 인한 포획손해 등을 보상하게 된다.<sup>21)</sup>

이 결과 런던보험자협회는技術約款委員會를 통해 1937년 2월 15일 同 免責條項上의 "海賊行爲 除外(piracy excepted)"라는 말을 삭제하였으며, 同條項에 의해 면책되는 위험으로 捕獲, 拿捕 등의 위험에 内亂, 革命 등의 위험과 海賊行爲를 추가하였다. 즉 "내란, 혁명, 모반, 반란 또는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내투쟁 또는 해적행위(Civil war, revolution, rebellion, insurrection or civil strife arising therefrom, or piracy)를 同條項의 免責危險에 추가하였다.<sup>22)</sup> 또한 同委員會는 1936년 스페인내란에 있어서도 공식적인 선전포고가 없었던 사실을 감안하여 "宣戰布告의 前後를 不問하고 (whether before or after declaration of war)"를 "宣戰布告의 有無를 不問하고 (whether there be a declaration of war or not)"로 개정하였다.<sup>23)</sup>

#### 나. 1942년 "Coxwold"號事件과 1943년 捕獲拿捕免責條項의 改正

1942년 Coxwold호사건<sup>24)</sup>에서 제2차세계대전중 기선 Coxwold호가 영국정부에徵用되었고 1940년 5월 Norway에 있는 영국군이 사용할 군기품(유류)을 적재한 선박이護衛船團의 해군장교의 명령에 따라 敵의潛水艦을 피하기 위해航路를變更하여 燈火管制된 상태에서 Skye島海岸을 따라 항해하는 도중에 예기치 못한 조류로 인하여 좌초되었다. 이 사건에서 문제는 그 좌초가 바다의 위험(perils of the seas)에 해당되느냐, 전투적 행동(warlike operations)의 결과에 해당되느냐였다. 영국의上院은 좌초의效果의이

20) 이 조항은 1919년 5월 1일에 개최된 로이즈 보험자나 런던보험회사 및 리버풀보험회사의 합동회의에서 채용되어 19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1920년 1월 1일자 협회적하약관에 포함시켰다. 그 조항의文言은 다음과 같다.  
warranted free of any claim based upon loss of , or frustration of, the insured voyage, or adventure, caused by arrests, restraints or detainments of kings, princes or peoples.

그러나 이 조항은 1938년 2월 1일자 협회적하약관의改正時 포획나포면책조항과 스트라이크면책조항이 삭제되는 경우協會戰爭約款(Institute War Clauses)(1938. 2. 1.)과 협회스트라이크약관(Institute Strike Clauses)(1937. 4. 26.)이 보험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삽입됨으로써 협회적하약관에서는 삭제되었고, 戰爭과 스트라이크를 부담하는 特別約款에만 삽입되었다.

21) 이재복, 앞의 책, 319쪽.

22) ロンドン保險協會編, 앞의 책, 247~248쪽.

23) 위의 책, 248쪽.

24) Yorkshire dale Steamship Co. Ltd., v. Minister of war Transport(The 'Coxwold') H. L. (1942) A. C. 691 ; 73 Ll. L. Rep. 1.

고 우세한 원인은 선박이 종사하고 있던 전투적 행동이라고 判決하였다.<sup>25)</sup>

이 上院의 判決은 결과적으로 상선이 군사적 행동에 종사하고 있는 한 그 상선의 충돌이나 좌초 및 기타 거의 모든 손해가 戰鬪的 行動의 결과로 인정되어 戰爭危險을 부담하는 보험자가 그 손해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은 그 당시 해상보험자들이 원래 의도하고 있던 戰爭免責條項의 解釋보다 광범위한 해석이었기 때문에, 순수한 해상위험(maritime perils)의 성격을 가진 해상손해를 戰爭負擔約款이 아닌 해상보험증권으로 부담하기 위하여 1943년 6월 1일자 免責條項에 다음과 같은 취지의 조문을 추가로 삽입하였다. 擔保(warranty)는 交戰勢力에 대한 敵對行爲에 직접적으로 起因하여 발생하지 않는 한(unless caused directly by a hostile act) 충돌이나 접촉(기뢰나 어뢰 제외), 좌초, 악천후 또는 화재를 免責하지 않는다는 條文 등을 삽입하게 되었다.<sup>26)</sup>

### 3. 1982년 新ICC와 1983년 ITC-Hull상 戰爭免責約款

新ICC(A) 제6조 戰爭免責條項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In no case shall this insurance cover loss damage or expense caused by  
6.1 war, civil war, revolution, rebellion, insurrection, or civil strife  
arising therefrom, any hostile act by against a belligerent power  
6.2 capture, seizure arrest restraint or detainment(piracy excepted),  
and the consequences thereof or any attempt thereat  
6.3 derelict mines torpedoes bomb or other derelict weapons of war

상기와 같이 新ICC 제6조에서는 戰爭, 內亂, 革命, 謀反, 反亂 및 그러한 行爲로 인하여 發生하는 國內鬭爭, 交戰勢力에 의한 또는 交戰勢力에 대한 一切의 敵對行爲, 捕獲, 拿捕, 强留, 抑止 또는 抑留, 强留, 抑止 또는 抑留(海賊行爲 除外), 그러한 行爲의 結果 또는 그러한 行爲의 企圖, 遺棄된 機雷, 魚雷, 爆彈 또는 기타 遺棄된 戰爭武器에 대해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ITC-Hull 제23조도 전쟁면책약관이 규정되어 있고, 新ICC와 그 내용은 거의同一하다. 다만, ITC-Hull의 경우는 전쟁위험으로 인한 책임까지도 면책되고 또 제23조 제2항에서 "barratry excepted"를 추가하여 선원의 악행을 해상위험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점만이 다르다. 이들 약관들의 戰爭免責條項에는 종래의 F.C. & S. Clause와는 달리 각 3항의 遺棄된 機雷, 魚雷, 爆彈 또는 기타 遺棄된 戰爭武器에 대해 면책으로 규정하고

25) Athel Line Ltd. v. Liverpool and London War Risks Insurance Association, Ltd.(The "Atheltemplar") C.A.(1946) 79 L1. L. Rep. 18 ; 이 사건에서도 油槽船이 徵用되어 油類를 적재하고 海軍基地에 도착하여 하역 대기 를 위해 정박 중에 좌초하였는데, 법원은 戰鬪的 行動의 결과라고 判決하였다.

26) J. Kenneth Goodacre, Marine Insurance Claims, 3rd ed., Witherby & Co., Ltd., 1996, p. 1159 참조.

있다. 이 조항은 1979년사건<sup>27)</sup>에서 浚渫船(dredger)이 새로 건설된 항구의 근처에서 海底 깊숙히 작업을 하던 중에 終戰時에 쓰레기로 버린 포탄의 폭발로 인해 침몰하였다. Walton판사는 相對敵이 사용할 수 없도록 戰爭時 탄기 등 군수품을 바다에 버리는 것은 戰鬪的 行動(warlike operation)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終戰時에 軍需品을 파괴시키는 것은 和解行爲(act of pacification)이며, 따라서 선박의 손해는 전투적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고 判決하였다.

이와 같은 紛爭의 素地를 제거하고, 앞으로는 어떠한 형태의 戰爭武器, 즉 戰爭時나 平和時를 不問하고 遺棄된 機雷나 魚雷 또는 기타 각종무기로 인한 손해를 부담하지 않겠다는 보험자의 의사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새로 新約款에서 別除로 신설된 조항이다.<sup>28)</sup>

또, 각 2항의 "piracy excepted"(해적행위 제외)라는 단서규정을 삽입하였다. 이것은 종래 전쟁위험으로 취급해 오던 해적위험을 1937년 이전과 같이 다시 해상위험으로 취급하고 있다. 보험자의 포괄책임주의 원칙으로 하고 있는 新ICC(A)약관에서는 海賊行爲를 戰爭危險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海賊行爲에 근인한 손해도 特約 없이 보험자가 보상한다. 그러나 열거책임주의를 택하고 있는 新ICC(B), (C)약관에서는 海賊行爲 제외하는 단서조건이 없기 때문에 海賊行爲인 강탈·파괴·방화 등의 위험은 戰爭危險에 속하고 보험자의 免責危險이 되며 特約에 의해서 담보가능하다.

즉 A약관에서는 海賊行爲가 戰爭危險에 제외되어 해상위험이 되고 B약관 및 C약관에서는 海賊行爲가 戰爭危險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는 단서조항의 삽입에 따라 위험에 대한 정의를 약관에 따라 달리 해야 하는 모순점이 지적된다.

## IV. 協會戰爭危險 擔保約款

### 1. 意義

앞서 언급했듯 해상보험증권에는 전쟁위험을 제외하는 전쟁위험 不擔保約款을 插入하는 것이 관습이다. 따라서 特約이 없는 한 전쟁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며, 특약에 의해 보험자가 전쟁위험을 부담하고자 할 때는 협회전쟁위험담보약관을 사용한다. 초기형식의 戰爭擔保約款은 1912년 F.S.R. & C.C. Clause(free from strikes, riots and civil commotion clause)가 제정됨에 따라 이 약관에 의해 제외되는 위험을 추가로 부담하기로 하여 전쟁위험 이외에 스트라이크위험도 담보하는 특약으로 변경되었다. 그 후 F.C. & S. Clause의 개정에 따라 擔保約款도 개정되었고, 그 명칭도 Institute War Clauses(Cargo)와 Institute

27) Coastaing-Blankvoort(U.K.)Dredging Co.Ltd., v. Davenport(Inspector of Taxes)(1979)(Lloyd's Rep. 395).

28) 이는 구중권상의 이탈리아서체약관인 제1조 捕獲拿捕免責條項과 제2조 燭雷免責條項(Free from mine and torpedo clause; Mine Clause)을 종합하여 보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War and Strike Clauses(Hull-Time)로 변경되었다.<sup>29)</sup>

## 2. 協會戰爭約款(Institute War Clauses, Cargo, 1982)

### (1) 約款의 趣旨 및 構成

協會戰爭約款은 新ICC(A), ICC(B) 및 ICC(C)에서 免責하는 戰爭危險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이 그 취지이며, 戰爭危險을 담보하는 데에는 필요 없는 ICC(A), ICC(B) 및 ICC(C)의 戰爭免責條項(War Exclusion Clause)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전쟁약관지 상최고우선조항이 1개 추가되어 있다.

戰爭危險擔保約款의 초기 형식은 단순히 協會捕獲·拿捕 不擔保約款에서 제외된 위험만을 담보하는 규정에 불과했다. 그 후 協會戰爭約款과 協會同盟罷業約款으로 분리 되었고 현재는 1982년 개정된 協會戰爭約款과 協會同盟罷業約款이 사용되고 있다.

新IWC는 독립된 약관으로 총 14개 條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ICC(A)와 擔保危險, 免責危險 및 保險期間에서 相異할 뿐 다른 조항은 모두 同一하다.

### (2) 擔保約款의 內容

적하보험의 경우 전쟁위험을 담보 받고자 할 경우 新ICC에 戰爭危險을 담보하는 新IWC가 첨부되어 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동일한 1개의 해상보험증권에 ICC와 IWC를 첨부하여 사용해 왔고, 戰爭危險을 해상위험의 추가·확장담보위험으로 간주하는 것을 관습으로 인정하여 왔다.<sup>30)</sup>

그러나 新ICC(1982) 제6조 戰爭危險免責約款上의 免責危險들이 新IWC(1982) 제1조 위험약관에서 擔保危險으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제1조 위험조항(Risks Clause)

1. This insurance covers, except as provided in Clauses 3 and 4 below, loss of or damage to the subject matter insured caused by
  - 1.1. war civil war revolution rebellion insurrection, or civil strife arising there from, or any hostile act by or against a belligerent power
  - 1.2 capture seizure arrest restraint or detainment, arising from risks covered under 1.1. above, and the consequences thereof or any attempt thereat
  - 1.3 derelict mines torpedoes bombs or other derelict weapons of war

29) 이시환, 앞의 논문, 136쪽.

30) R. H. Brown, Analysis of Marine Insurance Clauses, Book 1 The Institute Cargo Clauses(1982), London, Witherby & Co., Ltd., 1982, p. 24.

協會戰爭約款의 擔保危險들은 바로 新ICC(A) · (B) 및 (C)의 제6조 戰爭免責(war exclusion)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免責危險들이다.

다만 그 免責危險들 중, 捕獲, 拿捕, 强留, 抑止 또는 抑留의 경우에는 제1조 제1항의 열거위험으로 인해서 발생된 것에 한해서 擔保된다. 따라서 반드시 戰爭, 内亂, 革命, 謀反, 反亂 또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國內鬭爭 또는 交戰國에 의하거나 交戰國에 대한 敵對行爲로 인하여 발생한 捕獲, 拿捕, 强留, 抑止 또는 抑留만을 담보하도록 하여 平和時에는 담보되지 않는다. 또 담보가 “피보험목적물의 滅失 또는 損傷”에 제한되며 전쟁위험결과로 피보험자에 의하여 발생하는 비용 및 재정손실은 담보되지 않는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sup>31)</sup>

제1조 제1항은 敵對行爲 또는 戰爭行爲 등을 의미하지만 적대행위의 중지가 반드시 적대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위험의 效力を 중지시킨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sup>32)</sup>

約款 제1조 제3항에서는 遺棄된 機雷 등의 위험으로 인한 손해는 戰時 중에는 물론이고 평화시를 불문하고 담보된다.

新IWC의 위험조항은 舊協會積荷戰爭約款의 내용과 표현문구만 상이할 뿐 내용은 거의 동일하며 유일한 차이점은 舊協會積荷戰爭約款에서는 海賊行爲(piracy)를 담보하였으나 新協會戰爭約款(新ICC)에서는 海賊行爲를 담보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앞서 新ICC(A)의 면책위험에서 이미 살펴보았지만, ICC(A)의 戰爭危險 免責條項에서 '海賊行爲 除外'라는 문언을 삽입하여 海賊行爲를 戰爭免責危險에서 제외시킴으로써 海賊行爲를 戰爭危險에서 해상위험으로 간주하여 新ICC(A)의 담보위험으로 하였다. 따라서 新IWC에서도 海賊行爲를 해상위험으로 간주하여 擔保危險에 포함시키지 않았다.<sup>33)</sup>

MIA(1906)의 보험증권의 해석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强留 등"을 政治的 또는 行政上의 행위를 가르키며, 폭동 혹은 통상의 소송절차에 따라서 발생하는 손해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S.G. Policy Form에 명시된 위험에 적용하도록 한 것이었으며, 1982년 약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擔保約款 제2조의 共同海損條項<sup>34)</sup>은 新ICC(A) · (B) 및 (C)의 조항과 비교해 문장의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그 내용은 사실상 동일하며, 危險約款에 열거된 위험으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또는 회피와 관련되어 발생된 共同海損과 구조비도 本約款에 의해 보상된다.

제3조의 一般免責條項에서는 戰爭危險의 경우 合法的인 行爲인가 不法的인 行爲에 의한 損害인가는 보험자의 책임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不法的인 전쟁이건 合法的인 전쟁이건 관계없이 보험자가 모두 책임지기 때문이다.<sup>35)</sup>

31) Ibid., pp. 24~25 참조.

32) Ibid., p. 25.

33) 오시학, 海上保險論, 대학서림, 1990, 135쪽.

34) 新IWC(1982) 제2조 共同海損約款(General Average Clause)

2. This insurance covers general average and salvage charges, adjusted or determined according to the contract of affreightment and /or the fowening law and practice, incurred to avoid or in connection with the avoidance of loss from a risk covered under these clauses.

新IWC의 運送約款은 海上危險을 담보하는 ICC에서는 海上危險과 陸上危險을 함께 담보하는 소위 'mixed sea and land risks policy'로 되어 있으나, 戰爭危險(war risks)을 擔保하는 IWC에서는 육상위험은 담보하지 않으며, 보험의 목적인 화물이 海上運送中(whilst waterborne)에 겪게 될 위험만 담보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고 있다.

## 2. 협회선박전쟁스트라이크 約款(Institute War and Strikes Clauses(Hulls-Time), 1983)

### (1) 선박전쟁스트라이크 約款의 特性과 構成

積荷保險에서는 戰爭危險과 스트라이크위험이 각각 별도의 표준약관에 의해 부담되고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자기의 필요에 따라 전쟁이나 스트라이크위험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것은 戰爭危險保險은 육상운송위험에 대해서는 이용할 수 없고, 스트라이크위험보험은 그러한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와 같이 戰爭危險에 대해서 선박이 "海上(waterborne)"에 있는 동안에만 負擔한다는 保險期間의 制限은 선박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선박이 검사(survey)나 수리를 하기 위해 海上에서 벗어나 있는 동안에 船舶戰爭危險에 대한 보험보장을 제한하는 約款은 없다. 따라서 동일한 기간이나 동일한 항해에 대해 戰爭危險과 스트라이크위험을 모두 부담할 수 있으며 船舶戰爭危險保險者들이 동일한 보험계약조건에 戰爭危險과 스트라이크위험을 모두 포함할 수 있게 되었다.<sup>35)</sup>

協會戰爭스트라이크約款은 각각 모두조항과 5개 조항 및 말미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英國法 慣習條項, 제1조 危險條項, 제2조 準用條項, 제3조 抑留條項, 제4조 免責條項, 제5조 終了條項, 危險未開始條項으로 구성되어 있다.

### (2) 擔保約款의 内容

새로운 해상보험증권양식인 MAR양식에 사용되는 1983년 협회전쟁스트라이크약관의 제1조 위험조항(Perils Clause)은 다음과 같다.

1. Perils. Subject always to the exclusions hereafter referred to, this insurance covers loss of or damage to the Vessel caused by
  - 1.1 war civil war revolution rebellion insurrection, or civil strife arising therefrom, or any hostile act by or against a belligerent power
  - 1.2 capture seizure arrest restraint or detainment, and the consequences thereof or any attempt thereat
  - 1.3 derelict mines torpedoes bombs or other derelict weapon of war

35) 이상선, 新協會積荷保險戰爭約款 및 同盟罷業約款解說書, 대한손해보험협회, 1982, 30쪽.

36) 이재복, 船舶保險約款論, 保險研修院 1999, 300쪽.

- 1.4 strikers, locked-out workmen, or persons taking part in labour disturbances, riots or civil commotions
- 1.5 any terrorist or any person acting from a political motive
- 1.6 confiscation or expropriation

S.G. 보험증권에서는 本文約款에 전쟁과 전쟁유사위험이 피보험위험으로 열거되고, 다시 증권의 난외에 인쇄된 捕獲拿捕免責約款(F.C. & Clause)에서 본문약관에 열거된 그와 같이 전쟁유사위험을 결과적으로 免責하고 있다.

따라서 捕獲拿捕免責約款에 의해 제외된 위험들을 복원하기 위해 1970년 협회전쟁스트라이크약관에서는 "다음 약관에 의해 표준양식의 영국해상보험증권에서 제외된 위험"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1983년 협회전쟁스트라이크약관은 로이즈 S.G. 보험증권과는 달리 증권 자체에 피보험위험을 열거하고 있지 않은 MAR양식의 보험증권에 첨부되어 사용된다. 따라서 복원시켜야 할 제외된 위험이 없기 때문에 해상보험증권상 免責約款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없이 上記 약관조항에서와 같이 1983년 전쟁스트라이크약관에서 負擔하는 위험만을 모두 열거하고 있다.

상기 조항 중 同盟罷業者 등에 관한 제1조 제4항은 IWSC(1970)에서와 동일한 취지의 규정이다. IWSC(1970)에서는 政治的 동기로 행동하는 자만을 규정하였으나, 제1조 제5항에서는 테러리스트를 피보험위험으로 새로 추가하고 있다.

또한 제1조 제6항에서는 "몰수 또는 수용"을 피보험위험으로 새로 추가하고 있다. 여기에서 "몰수(confiscation)"란 정치적 행정상의 이유로 보상금의 지불 없이 정부당국에 의한 私有財產의 合法的인 押收를 의미하고, "수용(expropriation)"이란 개인이 자기 자신의 재산의 사용권을 박탈당하는 행위를 말한다.<sup>37)</sup>

그러나 이와 같은 몰수나 수용의 피보험위험과 관련하여 제4조 제1항4호의 면책조항에서는 피보험선박이 소유되거나 등록되어 있는 국가나 정부나 공공기관 또는 지방정부당국에 의한 몰수나 수용을 免責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조 제1항3호에서 징발이나 강제매매를 免責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 제1항의 5호와 6호에서는 검역규정과 관련되거나, 稅關이나 무역규정의 違反에 따라, 또는 司法節次上 피보험선박이 몰수나 수용되는 경우를 免責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4조 제1항에서는 因果關係는 "caused by" 대신에 "arising from"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핵폭탄의 폭발에 의해 초래된 불덩어리(fire ball)로 인한 화재나 열로 선박이 손상을 입은 경우, 피보험선박에 대한 적대적인 의도가 없었다 할지라도 전쟁스트라이크보험증권에 의해서는 그 손상이 보상되지 않는다.

37) N. G. Hudson and J. C. Allen, *The Institute Clauses Handbook*, London, Lloyd's of London Press Ltd, 1986, p. 209.

## V. 맷 음 말

戰爭危險 不擔保約款과 擔保特約은 新樣式의 보험증권이 제정되면서 이해하기 쉽도록 고쳐졌지만 그 체제나 해석에 있어 모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海賊行爲에 관한 約款이다. 앞서 언급했듯 戰爭危險의 意味와 範圍는 戰爭免責約款에 잘 규정되어 있지만, 과연 海賊行爲가 戰爭危險의 범위에 포함되느냐 하는 문제가 단서조항의 삽입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즉 ICC(A)약관에서는 海賊行爲가 戰爭危險에 포함되지 않지만, ICC(B)약관 및 ICC(C)약관에서는 海賊行爲가 戰爭危險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정 위험에 대한 정의가 약관에 따라 달리 해석되고 있는 모순점을 가지고 있다.

즉, ICC(A)약관에 戰爭擔保約款이 첨부될 경우에는 海賊行爲危險은 기본약관에 의해서 보상되지만 B약관 및 C약관에 戰爭擔保約款이 추가되면, 海賊行爲危險은 戰爭擔保約款에 의해서 보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ICC(A)약관 제6조 戰爭免責約款에서 海賊行爲를 戰爭危險에서 제외한다는 단서조건이 삽입됨으로써 야기되고 있는데 엄격한 法論理의 適用과 공평성을 원칙으로 하는 보험약관에 적합한 표현이 아니라 할 것이다. 오늘 날에는 海賊危險을 “도둑 또는 기타 犯罪行爲를 의도하고 자신의 行動을 실행하기 위해 武力使用을 의도하거나 武力を 갖추고 다른 선박에 승선하는 행위”로 정의하여 선박이 정박 중에 행하는 절도행위와 해안으로부터의 공격도 海賊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sup>38)</sup> 현재 세계의 바다 곳곳에서 해적들이 발호하여 인명을 해치고 재산을 약탈하고 있는데 국제 민간단체나 기구들의 공식자료에 의하면 海賊事件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해적들은 쾌속선에 로켓포를 장착하고 전자봉, 무전기 등을 갖추었으며 목표 선박이 출항지에서 선적한 화물의 명세서를 사전에 입수하는 등 정보망까지 갖추고 있는 실정이다. 약탈 대상도 전자제품 외에 세계적인 경제난으로 암시장 수요가 늘어난 디젤유, 중유 등으로 변화하고 있다. 船舶 및 船員을 납치해서 몸값을 받아내는 고전적 수법도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반면 최근에서선 선박 및 화물 전체를 납치하거나 승무원 전원을 살해하여 바다에 遺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해적위험은 그 수가 점차 증가<sup>39)</sup>하고 있으며 규모 또한 戰爭行爲와 유

38) International Maritime Bureau Piracy Reporting Centre(IMB PRC), Piracy and Armed Robbery against Ship, Report for the Period of 13-19 March 2001.

39)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해사국 해적신고센터(IMB PRC; International Maritime Bureau Piracy Reporting Centre)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2003.5.기준)동안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2천 638건이 발생하였다. 海賊行爲중 동남아(1천202건)와 극동(262건) 해역에서 55% 이상이 아시아 해역에서 발생하였으며, 그 행위가 갈수록 흡포화되고 있고 올해는 3월말까지 동남아(37건) 해역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모두 103건의 海賊行爲가 발생하는 등 1/4분기로는 처음으로 100건을 돌파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내 항공기 테러사건('01.9.11) 이후 고조되었던 LPG 등 위험물 운송선박을 이용한 해상테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점차 현실화됨에 따라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출처, [http://www.iccwbo.org/ccs/menu\\_imb\\_piracy.asp](http://www.iccwbo.org/ccs/menu_imb_piracy.asp)).

사한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戰爭行爲와 함께 면책위험으로 살펴보아야 하고, ICC(A)약관 상 海賊行爲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ICC(A) · (B) · (C)약관상 海賊行爲를 免責約款으로 통일시켜야 한다.

둘째, 積荷保險에서 협회전쟁약관 및 협회스트라이크 약관은 각각 14개의 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 危險約款을 비롯한 4가지 약관만 서로 다른 나머지 약관의 내용은 모두 동일하다. 또한 실무적으로도 戰爭危險과 스트라이크위험은 각각 담보되지 않고 단일할증보험료를 지급하면 동시에 부과되고 있다.<sup>40)</sup>

또한 협회전쟁약관 및 협회전쟁스트라이크약관은 14개 약관 중 10개의 약관은 協會積荷約款의 내용과 동일하다. 이는 戰爭危險 또는 同盟罷業危險만을 단독으로 담보할 경우 필요한 약관을 協會積荷約款에서 그대로 인용해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화물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적하보험에서 전쟁이나 스트라이크위험만을 단독으로 담보하는 적하보험계약은 거의 체결되지 않고 있다.<sup>41)</sup> 따라서 보험약관체계의 단순화 차원이나 해석에 불편함을 초래하므로 협회전쟁약관 및 협회동맹파업약관이 14개 약관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불필요하다.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戰爭危險 및 스트라이크약관은 면책위험으로, 이 위험을 담보하는 戰爭擔保約款에서 내용구성이나 실무적으로 戰爭危險과 스트라이크위험을 별도로 담보하는 약관은 불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약관을 통합하고, 그 조항 또한 간단·명료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40) 구종순, 海上保險, 博英社, 1995, 408쪽.

41) 구종순, “現行 協會積荷約款의 改正方案에 관한 研究”, 經營論集 제15권 제2호, 1999. 12., 101쪽.

## 參 考 文 獻

### 〈국내 문헌〉

- 구종순, 海上保險, 博英社, 1995
- \_\_\_\_\_, "現行 協會積荷約款의 改正方案에 관한 研究", 經營論集 제15권 제2호, 忠南大學校 經常大學附設 經營經濟研究所, 1999. 12
- 오시학, 海上保險論, 대학서림, 1990
- 이기태, 海上保險, 法文社, 1986
- 이상선, 新協會積荷保險戰爭約款 및 同盟罷業約款解說書, 大한손해보험협회, 1982
- 이시환, "海上保險에 있어서의 戰爭危險에 관한 一考察", 保險學會誌, 한국보험학회, 1986. 10
- 이재복, 積荷保險約款論, 保險研修院, 1995
- \_\_\_\_\_, 船舶保險約款論, 保險研修院, 1999
- 조현정, 海上保險에서 戰爭危險의 概念解釋에 관한 研究, 계명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경영경제 제26집 2호 1993. 6.

### 〈외국 문헌〉

- 加藤由作, ロイド保険證券の生成, 東京, 春秋社, 1953, 129쪽.
- 龜井利明, 海上保險證券免責條項論, 東京, 保險研究所, 1961, 293~294쪽.
- ロンドン保險協會編, 英國海上保險約款의 變遷, 東京, 損害保險事業研究所, 1968
- Brown Robert H., Dictionary of Marine Insurance Terms, 3rd. ed., London, Witherby & Co. Ltd., London, 1968
- \_\_\_\_\_, Marine Insurance, Vol 1. Principles & Basic Practice, 5th ed., London, Witherby & Co. Ltd., 1986
- \_\_\_\_\_, Analysis of Marine Insurance Clauses, Book 1 The Institute Cargo Clauses(1982), London, Witherby & Co., Ltd., 1982
- Goodacre J. Kenneth, Marine Insurance Claims, 3rd ed., London, Witherby & Co. Ltd., 1996
- Hudson N. G. and Allen J. C., The Institute Clauses Handbook, London, Lloyd's of London Press Ltd., 1986
- Lambeth R. J., Templeman on Marine Insurance, 5th ed, London, Macdonald & Evans Ltd., 1981
- Mustill Michael J., and Gilman J. C. B., Arnould's Law of Marine Insurance and Average, Vol. 2, 16th ed., London, Stevens & Sons, 1981